

건축구조설계! 어느 법제도 하에 있어야 하겠는가?

현재 건축 관련 법제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로 자기분야에 유리하도록 법제정 및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건축구조기술사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가?

그동안 제정된 법규 또는 입법 예고된 법규들 중 우리 건축구조기술사와 관련이 있는 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FTA가 통과되고 엔지니어링산업 시장이 개방될 시 우리 건축구조설계분야가 어느 법제도 하에 있어야 건축구조설계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지식경제부)

- 1) 목적 :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
- 2) 엔지니어링활동 : 시설물에 대한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 연구, 구매, 검사, 타당성조사, 자문, 시험, 유지 또는 보수와 위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3) 엔지니어링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름.
-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
- 6)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
- 7) (사)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관리.
- 8)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 해야 함.
- 9)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가 산정 기준을 고시.

→ **분석결과 의견** : 소방, 전기 및 통신은 각자의 관련법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경은 자체적인 단결로 적절한 조경설계 용역비를 받고 있으며 토목은 전체 토목설계분야에서 건축과 관련이 되는 부대토목설계가 10% 이내이므로 토목설계사업에 큰 영향이 없다. 다만 건축구조설계분야만 건축법의 건축설계 테두리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 건축구조설계사업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건축구조설계사업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구조는 토목구조와 함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영역 안에서 활동함이 바람직하다. 즉, 우리회 회원사는 모두 (사)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가입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관리 하에 우리 건축구조설계사업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엔지니어링활동업무에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가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차 광 찬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주)건우씨엔씨 대표이사

구조감리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건축감리와의 충돌이 예상되지만 이는 힘의 논리로 정리될 사항이다.

2. 건축기본법 (국토해양부)

- 1) 목적 : 건축정책의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
- 2) 기본이념 : 생활공간 조성, 공간환경 조성,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 3) 주요개념 : 건축디자인
- 4)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 건축의 생활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공공성 구현
- 5) 건축정책위원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역건축위원회
- 6) 건축문화의 진흥 : 건축디자인 기준, 재정지원, 민간전문가(건축사, 건축 도시 또는 조경관련 기술사)
→ 분석결과 의견 : 건축기본법은 건축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것이 주목적이며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건축디자인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설립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다루는 업무도 국가상징거리조성, 4대 강 수변공간디자인, 건축디자인시범사업, 해피하우스 시범사업과 전통한옥보급활성화 등이다. 즉 건축기본법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디자인을 다루는 것이지 건축엔지니어링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입법안 (국토해양부)

- 1) 배경 :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거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건축설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산업의 일부로 보아 제조업 중심의 성과관리 대상으로만 인식됨. 따라서 건축설계 분야도 산업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독립된 영역 구축이 필요함. 국토해양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및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음.
- 2) 건축서비스 정의 : 건축 및 토지와 관련된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행위.
- 3) 주요 내용 : 다양한 발주방식 적용,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건축문화 향상, 건축진흥원 설립.
→ 분석결과 의견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제정되자 건축설계업의 위기를 느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형식을 빌려 건축설계분야의 업역을 넓히고 건축사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강

하다. 따라서 우리 건축구조분야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에서 다루어져서는 안되며 건축서비스 정의에서도 안전성검토는 엔지니어링업무임을 주장하여 삭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행정안전부)

- 1)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대통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시장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2)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령 제38조) : 안전점검업무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건축사, 건축사협회, 위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위탁 가능함.
→ **분석결과 의견** : 광고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는자의 자격이 건축사는 되는데 건축구조기술사는 개인 자격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는 자에 구조안전에 대한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강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 **분석결과 의견**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지정된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6. 자연재해대책법 (소방방재청)

-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상 프로젝트에 대해 자체에서 전문가에게 검토 의뢰함.
→ **분석결과 의견**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자연재해대책 등에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축구조설계는 엔지니어링활동 업역에 포함되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제도 하에서 관리되어야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관공사에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건축물에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건축구조설계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전개 방향은 매우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검토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건축구조와 관련된 법규들에 대한 연구와 관심도 있어야 하겠다.